

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

## 1. 경 과

가. 발 의 자 : 김 경 의원 외 11명

나. 의안번호 : 제 1893 호

다. 발의일자 : 2024. 5. 27.

라. 회부일자 : 2024. 5. 30.

## 2. 제안이유

-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자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.

## 3. 주요골자

- 가. 어린이놀이시설의 합동점검계획 및 업무담당자 교육이수 관리 추가함.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 없음

나. 예산조치 : 원안(비용추계서) 참조

다. 기 타 : 입법예고(2024.6.4.~6.8.) 결과 : 의견 없음

## 5. 검토의견

- 본 개정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자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현행 제3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계획 포함사항에 “구청장이 관리·감독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합동점검계획 및 업무담당자 교육이수 관리에 관한 사항”을 추가하려는 것임.

[표]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) ① (생략)	제3조(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	② ----- -----
1. ~ 6. (생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<u>7. 구청장이 관리·감독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합동점검계획 및 업무담당자 교육이수 관리에 관한 사항</u>
7. (생략)	8. (현행 제7호와 같음)
③·④ (생략)	③·④ (현행과 같음)

- 먼저, “구청장이 관리·감독하는 어린이놀이시설”은 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」(이하 “법”) 제2조제3호1)에 따라 서울시

- 1)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3. “관리감독기관의 장”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·감독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.
  - 가. 교육장: 어린이놀이시설이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 소재하는 경우
  - 나.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): 가목 외의 어린이놀이시설의 경우

의 경우 각 구청장이 관내 학교, 유치원, 학원에 소재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제외한 모든 놀이시설에 대한 관리감독기관의 장이며, '24.3월말 기준 9,388개소임([표] 참조).

[표] 어린이놀이시설 현황('24.3.27. 기준)

(단위 : 개소)

합 계 ( '24.3.27.기준)	주택단지	도시공원	어린이집	놀이제공영업소	아동복지시설
	6,331	1,695	976	137	48
9,388	식품접객업소	종교시설	주상복합	하천	육아종합지원센터
	37	48	47	18	17
	대규모점포	목욕장업소	의료기관	박물관	공공도서관
	11	7	7	6	3

(출처: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(cpf))

- 한편,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(이하 “관리계획”)과 관련하여 현행 조례 제3조에 따르면 2년마다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며, ‘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’, ‘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’, ‘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세균·오염도 검사’, ‘놀이기구 위생관리를 위한 정기점검 및 모래시설정비’, ‘어린이 보호를 위한 폐쇄회로텔레비전 등 안전시설 설치’, ‘어린이 보호를 위한 어린이놀이시설의 미세먼지 대응대책’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토록 하고 있음.
- 동 개정안은 이 같은 관리계획의 포함사항에 ‘구청장이 관리·감독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합동점검계획 및 업무담당자 교육이수 관리에 관한 사항’을 추가하려는 것으로

- 상위법상 원칙적으로 각 구청장이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장은 관내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감독을 총괄하는 차원에서 합동점검계획과 업무담당자 교육이수관리에 관한 사항을 시장이 수립하는 관리계획에 포함시키려는 취지로 이해되며,
- 시와 구의 합동점검을 통해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은 물론 구청 업무담당자의 교육이수상태를 시가 관리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안전관리업무가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되어 긍정적인 조치라 여겨짐.
- 참고로, 시는 이미 관리계획에 어린이놀이시설의 합동점검계획 및 업무담당자 교육이수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조례시행에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임.

□ **2023년 어린이놀이시설 시·구 합동 점검결과**

- 점검기간 : (상반기) '23.4.3.~5.26. / (하반기) '23.9.20.~11.8.
- 점검대상 : 1,500개소(상반기 775개소, 하반기 725개소)
- 점검결과 : 지적사항 742건(상반기 419건, 하반기 323건)

(단위 : 건)

구 분	상반기		하반기	
	시설물 상태 이상	의무사항 미준수	시설물 상태 이상	의무사항 미준수
합 계	350	69	278	45
주택단지	229	53	183	38
도시공원	83	0	64	1
어린이집	28	5	21	1
기타시설	10	11	10	5